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3607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2. 5. 24.

판결 선고2022. 7.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7,662,647원 및 그 중 17,291,607원에 대하여는 2021. 12. 17.부터, 29,969,424원에 대하여는 2021. 12. 24.부터 각 2022. 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21. 8.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 8. 17. 접수 제123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① 2019. 2. 26. 피고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24. 2.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20. 5. 21.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신용보증원금을 3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21. 5. 21.까지(이후 2022. 5. 20.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이 C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신용보증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A은 장차 원고가 위 은행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④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1. 12. 17. C은행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17,537,287원(= 원금 17,504,506원 + 이자 32,781원)을,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1. 12. 24. 중소기업은행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30,078,904원(= 원금 30,000,000원 + 이자 78,904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5,16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잔액은 47,261,031원이다.

제1신용보증약정	17,537,287	245,680	17,291,607
제2신용보증약정	30,078,904	109,480	29,969,424
합계	47,616,191	355,160	47,261,031

2) 한편, 원고가 회수한 위 금원들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부터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96원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401,520원이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은 2021. 8. 1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8. 17. 피고 B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2369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47,662,647원(= 대위변제잔액 47,261,031원 + 확정손해금 96원 + 채권보전비용 401,520원) 및 그 중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잔액 17,291,60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12.

17.부터,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잔액 29,969,42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1. 1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은 2021. 11. 19.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A이 2021. 11. 19. 의정부지방법원 2021개회234196호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인 개인회생 개시신청 단계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금지명령에서 강제집행,

보전처분, 변제 요구행위 이외에 소송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 A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A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이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21. 8. 17.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제1, 2신용보증약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여기에 앞서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② 피고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해 대출기한을 연장하였고 2021. 10. 2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1. 11. 3.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채권최고액 100,100,000원)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19,900,000원은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당하게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소멸케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결국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 A이 소유한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피고 B으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 8. 17. 접수 제123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연주

별지